

미국의 사회보장제도 (Social Security)

미국의 연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개인과 가족의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노인과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복지제도이다.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고 가족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이다. 사회보장제도를 은퇴자들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회보장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명시하고 있다.

- * 은퇴보험, 장애인보험, 노인·장애인·말기 신장질환환자를 위한 의료보험, 처방약 혜택, 재향 군인 복지, 실업급여, 저소득층을 위한 임시 지원, 푸드스탬프(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식료품 구입비용을 지원), 아동 복지 서비스 등

현재 약 1억 6천만 명이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약 5천 9백만 명이 매달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. 수입이 있는 사람은 소득액의 12.4%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해야하며 2017년 사회보장세 납부액 상한은 약 \$7,886이다. 자영업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있는 경우 사회보장세의 절반(소득액의 6.2%)을 고용주가 납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. 미국 내 모든 연령층 및 사회경제적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.

○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대상

- 은퇴연금 : 은퇴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0점의 사회보장 크레딧(Social Security Credits)을 쌓아야 한다. (1929년 이전 출생자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됨) 이 조건을 만족하면 만 62세부터 매월 은퇴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.
- 장애연금 : 장애가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40분기 동안 20점 이상의 사회보장크레딧을 취득한 경우 (20/40 법칙) 매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. (만 31세 이전에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)
- 사망하거나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상해 등의 이유로 은퇴로 인정된 경우 사망, 장애, 은퇴 상태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3분기 동안에 쌓은 사회보장크레딧이 6점 이상이라면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은퇴·장애연금 수혜자의 배우자가 만 62세 이상이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수혜자와 이혼한 전배우자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고 현재 미혼인 경우라면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수혜자의 미혼자녀의 경우에도 연령과 장애 여부에 따라 일부 혜택의 대상이 된다.

○ 사회보장크레딧(Social Security Credits) 취득 방법

- 매년 11월이 되기 전 사회보장국장이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사회보장크레딧 1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소득액 (자영업의 경우)을 발표한다. 2017년의 경우 소득액 \$1,300 당 1점을 취득할 수 있다. 매년 최대 4점의 사회보장크레딧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최소 10년 이상 일하면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40점의 사회보장크레딧을 취득 할 수 있다.

○ 은퇴연금 (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)

- 은퇴 전까지 벌어들인 수입이 많을수록 은퇴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며 꾸준히 수입을 벌어들인 사람이 중간에 실업기간이 있었던 사람보다 수령액이 많을 수 있다. 만 62세부터 은퇴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만기은퇴연령(출생연도에 따라 만 66세 부터 67세까지 다양함)부터 은퇴연금을 수령하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. 예를 들어 2017년에 만 62세가 되는 사람이 은퇴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다면 만기은퇴연령에 은퇴연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수령액이 25.8% 가량 낮다. 만기은퇴연령보다 늦게 은퇴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보다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액의 증가율은 출생연도에 따라 상이하다.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더라도 만 62세 이상이면 은퇴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. 만기은퇴연령 이후에는 계속 일을 하더라도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는다. 2017년 평균 은퇴연금 수령액

은 은퇴자의 경우 \$1,360, 은퇴한 부부의 경우 \$2,260이며 은퇴연금 수령액은 출생연도, 은퇴 전 벌어들인 수입, 은퇴시기,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적정 은퇴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사전에 상담을 받아야 한다. 은퇴연금은 은퇴 전 수입의 40% 수준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국에서는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저축 및 투자를 권고하고 있다.

○ 장애연금 (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s)

- 신체적, 정신적 장애로 인해 1년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연금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사회보장국은 별도의 엄격한 장애여부 판별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와 지자체 정부의 판별 기준과 다를 수 있다. 사회보장국은 지원자들의 사회보장크레딧 조건을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시킨 지원자에 한해 각 지원자들이 거주하는 주의 장애여부 판별부서 (Disability Determination Services Office)에 지원서를 보낸다. 장애여부 판별부서는 지원자의 담당의에게 지원자의 의학적 상태, 신체적 제약, 각종 신체검사 결과, 치료 및 수술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이 정보를 심사에 활용하여 장애여부를 판별하게 된다.

○ 은퇴·장애연금 수혜자의 가족이 받는 혜택

- 은퇴·연금 수혜자의 가족들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한 가족이 수령할 수 있는 최대 합계액은 수혜자의 연금수령액의 150~180% 수준이다. 이를 초과할 경우 수혜자의 수령액은 그대로 두고 수혜자 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줄인다. 수혜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혜택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.

① 배우자 : 만 62세 이상이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소득이 낮았던 경우 수혜자의 연금 수령액의 최대 절반까지 받을 수 있음.

② 자녀 : 만 18세 이하(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의 경우는 혜택 받을 수 있음)인 경우 수혜자의 연금 수령액의 최대 절반까지 받을 수 있음. 만 22세 이전에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. (단, 기혼이면서 장애가 없는 자녀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음)

③ 수혜자가 사망한 배우자 : 만 60세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만 50세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함.

④ 수혜자와 이혼한 전배우자 : 10년 이상 수혜자와의 결혼관계가 지속되었고 현재 미혼인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음. 단, 수혜자와 이혼한 배우자 모두 만 62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지 2년 이상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.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

혜택은 수혜자와 수혜자 가족이 받는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.

○ 메디케어 (Medicare)

- 메디케어는 사회보장국에서 관리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이다. 사회보장세와는 별도로 메디케어세를 따로 납부하는데 수입의 2.9%를 메디케어세로 납부해야한다. 고용주가 있는 경우 고용주가 메디케어세의 절반인 1.45%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. 벌어들이는 수입이 높은 경우 의료비 보험과 처방약 비용지원 부분에 있어서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하는데 이런 경우는 전체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수혜자중 5%에 불과하다. 메디케어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종류로 나뉜다.

① 메디케어 파트A (병원비 보험) :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보험. 만 65세 이상이며 은퇴연금 수혜 대상자이면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음. 장애연금 수혜자의 경우 장애연금을 수령한지 24개월이 된 시점부터 메디케어 파트A의 혜택 대상자가 될 수 있음.

② 메디케어 파트B (의료비 보험) : 외래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 적용되는 보험. 파트A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파트B의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음. 파트B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보험료를 내야하며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임. 2017년의 기본 보험료는 매월 \$134였으며 벌어들인 수입이 아주

높은 경우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함.

③ 메디케어 파트C : 파트A와 파트B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선택적으로 파트C를 이용할 수 있음. 파트C는 병원비, 의료비, 처방약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고급 프로그램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포함하기 때문에 파트C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파트B 보험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함.

④ 메디케어 파트D (처방약 비용지원) : 처방약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보험. 파트A와 파트B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선택적으로 파트D를 이용할 수 있으나 추가 보험료를 내야함.

○ SSI 프로그램 (Supplemental Security Income Program)

- SSI 프로그램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그리고 연령에 관계 없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프로그램이다. SSI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자인 경우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로부터 푸드스탬프(식료품 구입비용 지원)나 메디케이드(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) 혜택을 받기위해 지원할 수 있다. 사회보장국이 SSI 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비용은 사회보장 신탁자금이 아니라 미재무부 일반기금을 사용하고 있다.

[참고자료]

1. Social Security Handbook
(https://www.ssa.gov/OP_Home/handbook/handbook.01/handbook-toc01.html)
2. Retirement Publication
(<https://www.ssa.gov/pubs/EN-05-10035.pdf>)
3. Disability Publication
(<https://www.ssa.gov/pubs/EN-05-10029.pdf>)
4. Medicare Publication
(<https://www.ssa.gov/pubs/EN-05-10043.pdf>)
5. SSI Publication
(<https://www.ssa.gov/pubs/EN-05-11000.pdf>)